의안번호	2200009
의 뢰 인	정성호의원
회 답 일	2024. 7. 9.
추계번호	24D0283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감사위원회, 사회협약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7억 9,7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41억 4,000만원(연평균 8억 2,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평균
위원회, 실무위원회, 실무지원단의 설치·운영, 감사위원회·감사기구의 설치·운영 및 감사위원장 임명, 사회협약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11조, 제21조~제23조, 및 제46조)	797	812	827	844	860	4,140	828

주: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조(경기북부자치도의설치)	-정부의 직할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경기북부자치도"라 함)를 설치함 -경기북부자치도의 관할구역은 고양시·남양주시·파주시·의정부시·양주시·구리시·포천시·동두천시·가평군·연천군으로 함[1]	의무규정
2	안 제8조(경기북부자치도에 대한 특별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기북부자치도에 대하여 행정상·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경기북부자치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1) [참고 1] 제정안에 따른 관할구역 및 인구 수의 변화

3	안 제11조(경기북부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경기북부자치도의 원활한 출범 지원 등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기북부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둠 -경기북부자치도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함 -경기북부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검토하고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함	의무규정
4	안 제14조(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3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음	재량규정
5	안 제16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경기북부자치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도인사위원회 또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음	재량규정
6	안 제17조(특례부여 및 지원)	-경기북부자치도의 시장·군수는 경기북부자치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시·군에 대한 특례 부여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음 -시장·군수의 특례 부여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경기북부자치도는 특례를 부여받은 시·군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7	안 제19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국가는 경기북부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각종 국가 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8	안 제2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제23조(감사위원회 사무기구)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북부자치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둠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위원회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고, 사무기구의 직원은 일반직·특정직 국가·지방공무원으로 함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무기구의 조직·직무·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함	의무규정
9	안 제30조(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경기북부자치도지사 및 도교육감, 시장·군수는 각급 학교의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10	안 제36조(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례)	-경기북부자치도지사는 농지의 이용, 보전 등의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경기북부자치도에 농지관리위원회를 둠	의무규정
11	안 제38조(접경지역 농·축산물 군급식 공급지원 등)	-국가는 군부대에 납품하기 위하여 경기북부자치도의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음	재량규정
12	안 제44조(미활용 군용지의 처분방법 등) 및 제45조(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특례)	-국방부장관은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 미활용 군용지를 징발 해제, 양여, 매각 등의 처분을 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함	의무규정
		-경기북부자치도지사 및 관할 시장·군수가 미활용 군부지를 매입하거나 미활용 군용지의 지상물 등을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해당 미활용 군용지 또는 지상물 등을 군부대가 현재 사용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경기북부자치도 또는 관할 시·군의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음	재량규정
13	안 제46조(사회협약)	-경기북부자치도지사는 분야별 사회협약 체결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7조(경기북부자치도의설치)	×	-경기북부자치도 신설에 따라 새롭게 선출되는 경기북부자치도지사·도교육감 및 추가 채용되는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경기북부자치도청 청사 신축 경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등의 재정소요가 발생 -다만,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에서 이관될 공무원의 수 및 신규채용 직원의 수, 신축 청사의 규모 및 위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추가 설치[2]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2	안 제8조(경기북부자치도에 대한 특별 지원)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경기북부자치도에 대한 행정상·재정상의 특별 지원 규모를 추정 곤란
3	안 제11조(경기북부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	-
4	안 제14조(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	-구체적인 주민투표 요건을 도조례로 위임하고 있고, 주민투표 실시 청구요건 완화에 따른 주민투표 증가 건수 등을 추정 곤란
5	안 제16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	-지역인재 선발채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도조례로 위임하고 있고, 수습과정을 거쳐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될 지역인재의 수 등을 추정 곤란
6	제17조(특례부여 및 지원)	×	-시장·군수의 요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여할 특례의 내용, 경기북부자치도의 시·군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 등을 추정 곤란
7	안 제19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별도 계정으로 지원할 각종 국가 보조사업 수행비용 등의 규모, 지원비율 등을 추정 곤란
8	안 제2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제23조(감사위원회 사무기구)	○	-
9	안 제30조(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	-농어촌유학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도조례로 위임하고 있고, 각급학교의 농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규모 추정 곤란

2) 특별행정기관은 행정수요와 지역적 특성 등에 따라 관할구역을 정하기 때문에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설치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구역이 반드시 동일하지 않으므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추가 설치 등

10	안 제36조(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례)	×	-농지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위임하고 있어 위촉위원에 대한 수당, 운영경비 등을 추정 곤란
11	안 제38조(접경지역 농·축산물 군 급식 공급지원 등)	×	-국가의 접경지역 농산물·축산물·수산물 우선 구매 규모 및 단가 등을 예측하기 어려움
12	안 제44조(미활용 군용지의 처분방법 등) 및 제45조(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특례)	×	-국방부장관이 토양오염 등을 제거해야 할 미활용 군용지의 위치, 오염제거 비용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미활용 군용지와 교환될 공유재산의 가치 등을 추정 곤란
13	안 제46조(사회협약)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안 제11조에 따라 경기북부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고,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고 가정

○ 위원회의 위원은 총 30명이며, 이 중 20명이 위촉위원이라고 가정

○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25명이며, 이 중 15명이 위촉위원이라고 가정

○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에게 회의당 25만원의 회의참석 및 안건검토 수당을 지급하며, 각각 연 4회 회의를 실시한다고 가정

○ 회의참석 및 안건검토수당은 추계기간 동안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

❑ 안 제11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실무지원단을 설치한다고 가정하며, 실무지원단의 운영비용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특별자치시·도지원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설치된 국무조정실의 특별자치시·도지원단의 평균 운영예산을 준용함

○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의 특별자치시·도지원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특

을 예측하기 어려움

< (참고) 경기북부지역 특별행정기관 설치·운영 현황 예시 >

· **(병무청)** 경인지방병무청(인천·경기)
· **(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경기도 고양·의정부·남양주·파주·구리·포천·양주·동두천·연천·가평, 강원도 철원)/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부천·김포)
· **(고용부)** 의정부지청(경기도 의정부·남양주·구리·포천·양주·동두천·연천, 강원도 철원)/고양지청(고양·파주)/부천지청(부천·김포)/강원지청(강원도 춘천·홍천·인제·화천·양구, 경기도 가평)

자료: 행정안전부

별자치시·도지원단의 2024년 운영예산은 2억 2,600만원[3]이고, 평균 운영예산은 5,650만원임

❑ 안 제21조~제23조에 따라 감사위원회 및 사무기구 설치·운영, 감사위원장의 임명에 필요한 비용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감사위원회의 사례를 준용함

○ 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회 및 감사기구의 예산은 유사사례인 강원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회 및 감사기구의 예산을 준용

- 감사기구의 경우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감사국[4]의 인력 및 예산이 일부 이관될 수 있으나, 그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감사국의 인력·예산이 이관되지 않는다고 가정

○ 안 제22조에 따른 감사위원장의 연봉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장의 연봉을 준용

❑ 안 제46조에 따른 사회협약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도조례로 위임하고 있어 구체적인 소요비용을 알기 어려우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유사사례를 준용

○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협약위원회 운영비는 2024년 기준 3,700만원임

- 회의참석수당 2,200만원, 워크숍 및 토론회 운영비 1,500만원[5]

❑ 소비자물가상승률[6]과 공무원임금평균상승률[7]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함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제정안의 부칙과 법안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

---

3) 행정실무원 임금, 직책수행경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자료: 국무조정실 2024년 예산안 설명자료)

4) 경기도의 경우 감사국을 운영 중이며 조례 개정으로 2024년 9월부터 감사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임

5)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2024년 예산서

6)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2024년 4월 기준, 단위: %)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CPI)	2.6	2.2	2.2	2.1	2.1	2.1	2.0

7)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임금평균상승률

(2024년 4월 기준, 단위: %)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공무원임금평균상승률	2.5	1.9	1.9	1.9	1.9	1.9	1.9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위원회·실무위원회·실무지원단의 설치·운영(안 제11조)

❑ (위원회·실무위원회) 추계의 전제에 따라 위원회의 경우 위촉위원 20명, 실무위원회의 경우 위촉위원 15명에 대하여 연 4회 회의를 하고 회당 25만원의 수당을 지급

❑ (실무지원단) 추계의 전제에 따라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의 특별자치시·도지원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자치시·도지원단의 2024년 평균 운영예산(5,650만원)을 준용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

❑ 따라서, 안 제11조에 따라 위원회, 실무위원회, 실무지원단을 설치·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9,4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4억 8,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2] 위원회·실무위원회·실무지원단의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위원회의 위촉위원 수당	20	20	20	20	20	100
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 수당	15	15	15	15	15	75
실무지원단 운영비	59	60	61	62	63	305
합 계	94	95	96	97	98	480

주: 단수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감사위원회·사무기구의 설치·운영 및 감사위원장 임명(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 (감사위원회·사무기구) 안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 및 사무기구를 설치·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5억 3,6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27억 9,200만원으로 추계됨

○ 2024년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및 사무기구의 운영 예산(5억 1,265만원[8])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

❑ (감사위원장) 안 제22조에 따라 감사위원장을 임명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억 2,8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6억 6,300만원으로 추계됨

○ 추계의 전제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의 연봉을 준용하고 공무원 임금평균상승률을 적용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정무직 지방공무원)의 2024년도 연봉은 1억 1,382만원, 직급보조비는 월 65만원, 정액급식비는 월 14만원으로, 인건비가 연간 1억 2,330만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안 제21조~제23조에 따라 감사위원회·사무기구를 설치·운영하고, 감사위원장을 임명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6억 6,4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34억 5,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감사위원회·사무기구의 설치·운영 및 감사위원장 임명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감사위원회·사무기구의 설치·운영	536	547	558	570	581	2,792
감사위원장의 임명	128	130	132	135	138	663
합 계	664	677	690	705	719	3,45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사회협약위원회의 설치·운영(안 제46조)

❑ 추계의 전제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운영비를 준용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9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2억 500만원으로 추계됨

8) 감사사업비 4억 1,109만원, 기본경비 9,017만원 등(자료: 강원특별자치도 2024년 예산서)

[표 4] 사회협약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사회협약위원회의 설치·운영	39	40	41	42	43	205

라. 추계결과

❑ 제정안에 따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감사위원회, 사회협약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7억 9,7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41억 4,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5]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위원회, 실무위원회, 실무지원단의 설치·운영 (안 제11조)	94	95	96	97	98	480
감사위원회·감사기구의 설치·운영 및 감사위원장 임명 (안 제21조~제23조)	664	677	690	705	719	3,455
사회협약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46조)	39	40	41	42	43	205
합 계	797	812	827	844	860	4,14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Ⅳ.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Ⅴ.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한예슬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한예슬	02-6788-4831	yeseulhan@nabo.go.kr

[참고 1] 제정안에 따른 관할구역 및 인구 수 변화

❑ 제정안에 따른 관할구역 변화

현 관할구역과 제정안에 따른 관할구역의 비교

구 분	현 관할구역	제정안에 따른 관할구역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양평군, 동두천시,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시흥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안성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양평군, 과천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 제정안에 따른 인구 수 변화

현 경기도 인구 수와 제정안에 따른 예상 인구 수

(단위: 명)

구 분	현 인구 수	제정안에 따른 예상 인구 수
경기도	13,661,438	9,866,867
경기북부특별자치도	-	3,572682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2024.6.)